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5. 1(금)  
발 의 자 : 박찬원 의원  
찬 성 자 : 이주웅, 지광천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심현정, 전수일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명순 의원

## 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», 「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심사기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», 「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심 사 계 획

## 1. 활동목적

-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

## 2. 심사안건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
-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## 3. 활동기간

-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이주응 의원, 박찬원 의원, 지광천 의원, 심현정 의원, 전수일 의원,  
이명순 의원

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 수	내 용	비 고
5.11 (월)	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개요설명(기획실장) ○ 검토보고(전문위원) ○ 계속비사업(기획실장) ○ 세입예산(재무과장) 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- 의회사무과, 기획실, 읍·면, 행정과	
5.12 (화)	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1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【행정지원국】 - 올림픽유산과, 복지과(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), 민원과, 재무과, 허가과, 교육체육과	
5.13 (수)	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1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【경제건설국】 - 문화관광과, 일자리경제과(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) 환경위생과(수질개선특별회계)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도시과, 시설관리과	

일시	차 수	내 용	비 고
5.14 (목)	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0:00)	<b>1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</b> ○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 <b>【보건의료원】</b> - 보건사업과, 진료지원과 <b>【농업기술센터】</b> - 농업축산과, 유통원예과, 기술지원과 <b>【상하수도사업소】</b> - 상하수도사업소(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)	
5.15 (금)	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(11:00)	<b>1.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</b> ○ 예산안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 <b>2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</b> ○ 예산안조정, 심사보고서 채택	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 □ 평창군의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